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2618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9월 8일
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지원 및 가이드라인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함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지원 및 가이드라인 마련의 주체에 구청장을 추가함(안 제7조의4제1항, 제2항, 제3항)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항의 “시장”을 “시장과 구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4(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) ① 시장과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(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 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
③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7조의4(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) ① 시장과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(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.</u></p>